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7,104,478	15,513,134
일반회계	487,008,834	14,610,265
특별회계	30,095,644	902,869
기타특별회계	30,095,644	902,869
주택사업특별회계	56,915	1,70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551,955	46,559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6,341,376	190,241
자활기금특별회계	1,163,675	34,91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557,334	196,72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077,354	32,321
수질개선특별회계	6,700,500	201,015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4,704,227	141,127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917,775	57,53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533	73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68,86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1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동일부서의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